

# 노동자협동조합법안에 관해서

생활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 의욕 및 능력에 따라 취업할 기회가 반드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

법 정비

## 노동자협동조합

조합원이 **출자**하여, 각각의 **의견을 반영**하여 조합의 사업이 이루어지고, **조합원 스스로가 사업에 종사하는 것**을 《기본원리》로 하는 조직

조합을 통하여

다양한 취업기회  
창출

지역에서 다양한 수요에  
맞는 사업 실시

### 【구체적인 사업 사례】

- > 돌봄, 복지 관련(방문요양 등)
- > 육아 관련(방과 후 교실 등)
- > 지역 만들기 관련(농산물 가공과 직매점(直売所) 등 거점 정비, 종합건물관리 등)
- > 청년, 곤궁자(차상위 계층) 지원(자립 지원)

그리고

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

## 1. 법제화 필요성

○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

출자, 의사결정, 노동을 함께 영위하는 조직이며, 지역에 공헌하고, 지역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법인을 간편하게 설립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

○ 현행법 상 이러한 성질을 갖춘 법 인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 형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.

	기업 조합	NPO 법인	노동자협동조합
출자	○	×	○
설립	인가 주의	인증 주의	준칙 주의

## 2. 노동자협동조합법안 주요내용

- 이 법안은 1978 년에 산림협동조합법이 제정된 후, 42 년만에 만들어지는 일본의 새로운 협동조합법임
- 이 법안은 171 조(본문 137 조, 부칙 34 조)로 구성되어 있음
- 국제적이며 보편적인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1 인 1 표의 의결권과 출자, 협동조합 7 원칙에 따른 사업을 운영하고 그 사업에 종사함
- 조합 기본원리에 근거하여 조합원은 가입할 때 출자하고, 조합이 운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함
- 조합은 국제노동기구(ILO) 193 호 권고(2002 년)에 따른 수준이 높은 노동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. 일하는 조합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좋은 일자리(Decent work)과 노동의 존엄을 보장한다.
- 조합은 조합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법규를 준수함
- 이 법안의 최종적 목적은 노동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“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실현”에 이바지하는 것임. 이 것은 협동조합 제 7 원칙(커뮤니티 관여)에 의거한 것임. 2015 년에 UN 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도 반영한 것임. 이 목표와 기조가 일본의 협동조합법에 명기된 것은 처음.
- 이 법은 원칙적 접근을 중시함. 조합 설립은 법에서 정의된 조건들이 모두 마련된 후에 도도부현(都道府県) 담당과에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함. (준칙주의). 이것은 감독청부터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한 일본의 다른 협동조합법이나 비영리활동단체법(인증 제)과 다른 점임
- 출자 배당은 인정하지 않음(비영리 성). 잉여금 배당은 종사 분량에 따름
- 기타 정관, 임원 등(이사, 감사, 조합원 감사회), 총회, 소관부처 감독, 기업 조합 또는 NPO 법인에서의 조직 변경, 검토 조항(시행 후 5 년)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